

제253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
2006.9.4 ~ 9.15(12일간)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9. 15.
기획행정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6년 8월 28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8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5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기획행정위원회(2006.9.5)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인력과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관련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616명 ⇒ 2,621명(5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 : 1,460명 → 1,465명(증 5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변동없음
 - 소방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직급별 증감내역 : 일반직 5명 증원
 -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 : 3명(3급 1, 3~4급 1, 4급 1)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기능 보장 : 2명(5급 1, 6급 1)

Ⅲ.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인력 3명과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관련 기능 보장 2명 등 공무원 정원을 5명 증원하는 것으로
-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직위는 3급 경제통상국장, 3급~4급 기획관, 4급 자치연수원 수석교수이며, 충청북도에는 이번에 지방직으로 전환된 3명외에도 6명의 국가공무원이 있음.
 - ※ 기획관 국가 4급 → 지방 3급~4급, 수석교수 국가 5급 → 지방 4급으로 상향조정되었음.
- 지방분권화 시대에 자치인사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자치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가공무원으로 보직되고 있는

6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방직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2005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명으로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198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 추세가 나타났지만 최근에 와서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정부는 2006년 6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5년간 32조원을 투입할 계획임. 따라서 우리도에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기능을 보장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
----------	----

제출연월일 : 2006년 8월 28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인력과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관련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616명 ⇒ 2,621명 (증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60명 ⇒ 1,465명 (증5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변동없음
 - 소방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직급별 증감내역 : 일반직 증5명
 - 국가직 → 지방직 전환 : 3명(3급 증1, 3~4급 증1, 4급 증1)
 -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 기능보강 : 2명(5급 증1, 6급 증1)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참고자료 : 붙임

조례 제 15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를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로 한다.

제2조중 “2,616명”을 “2,621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460명”을 “1,465명”으로 한다.

별표중 정원의 총수 2,616명을 2,621명(증원 5명)으로 하고, 본청의 정원 968명을 972명(증원 4명)으로, 직속기관의 정원 1,290명을 1,291명(증원 1명)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종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총정원	2,621	972	65	1,291	293	
정무직(도지사)	1	1				
일반직	소계	1,070	805	40	64	161
	2-3급	1		1		
	3급	8	6		1	1
	3-4급	1	1			
	4급	57	37	7	5	8
	5급	209	166	7	14	22
	6급	357	272	13	18	54
	7급	377	279	12	22	64
	8급	59	43		4	12
일반정	소계	4	3	1		
	5급	2	1	1		
	6급	1	1			
	7급	1	1			
별정직	소계	17	10	1	5	1
	1급	1	1			
	5급	2	2			
	6급	9	3		5	1
	7급	3	2	1		
	8급	1	1			
연구직	소계	139	1		109	29
	연구관	21			18	3
	연구사	118	1		91	26
지도직	소계	24			24	
	지도관	6			6	
	지도사	18			18	
소방직	소계	1,047	59		988	
	소방정	10	2		8	
	소방령	29	10		19	
	소방경	58	4		54	
	소방위	67	6		61	
	소방장	142	11		131	
	소방교	324	24		300	
	소방사	417	2		415	
교원	소계	44			44	
	학장	1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32			32	
	조교	11			11	
기능직	소계	275	93	23	57	102
	6급	9	6	1	1	1
	7급	29	10	3	4	12
	8급	54	17	1	4	32
	9급	88	24	8	29	27
	10급	95	36	10	19	3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u>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616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60명</u></p> <p>2. ~ 4 (생략)</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 <u>102조</u>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p> <p>-----</p> <p>-----</p> <p>제2조 (정원의 총수)-----</p> <p>-----<u>2,621명</u>-----</p> <p>-----</p> <p>1. ----- : <u>1,465명</u></p> <p>2. ~ 4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생략)

제12조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① ~ ② (생략)

③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두는 원장·과장 등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별표 3]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간 등의 직급기준

1. 본청(제8조관련)

구 분	실·국장	과 장	담당관	소방담당 본 부 장	소방담당 과 장
서울특별시	2급 또는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소방 준 감
부산광역시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소방 준 감
대구인천광주대전 울산광역시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지방소방정
경기도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소방 준 감
도(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를 제외한다.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지방소방정

비 고

1. 위 표의 실·국장 중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자치부령에 표시하고, 경기도의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담당 관 중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는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부산광역시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그 밖의 광역시·도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2. ~ 5. (생략)

비 용 소 요 추 계 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의 총수 : 2,616명 ⇒ 2,621명(증5명)
 - 3급1, 3~4급1, 4급1, 5급1, 6급1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262,413	
◦인건비	239,656	
- 기본급	167,667	※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 적용 - 3급 (1명) : 20호봉 기준 - 3~4급(1명) : 20호봉 기준 - 4급 (1명) : 20호봉 기준 - 5급 (1명) : 18호봉 기준 - 6급 (1명) : 18호봉 기준 - 3~4급의 경우 3급 적용 산출
- 수 당	47,019	
- 정액급식비	3,120	
- 교통보조비	3,240	
- 명절휴가비	5,776	
- 가계지원비	9,626	
- 연가보상비	3,208	
- 기타직보수		
- 일용인부임		
◦물건비	4,86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여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4,86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이전경비	17,897	
- 성과상여금	1,925	
- 연금부담금	13,791	
- 국민건강보험금	2,181	
- 연금지급금	-	